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2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3. 7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-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, 안전문화, 안전정보, 인적·사회적 재난,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규정 수 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국 명칭변경 : 건설국 → 안전건설국
- 부서 명칭 변경 : 치수방재과 → 안전치수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'안전한 사회'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·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하고,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, 이를 지방 현

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고, 국가의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책 총괄·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에 국 명칭을 “건설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9조에 부서 명칭을 “치수방재과”를 “안전치수과”로 변경함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개편방향 및 서울시의 조직에 맞추어 종합적·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, 검토결과 서울시의 「자치구 안전기구 개편 지침(2013.5월)」에 따라 안전전담기구(국·과)의 명칭에 ‘안전’을 포함하였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츄츄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 됨에 따라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, 안전문화, 안전정보, 인적·사회적 재난,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명칭변경 : 건설국 → 안전건설국

나. 부서 명칭 변경 : 치수방재과 → 안전치수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필요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6.13 ~ 6.18, 5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 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국의 설치) 중 “건설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건설국)”을 “(안전건설국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설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하며, “치수방재과”를 “안전치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“건설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

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의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의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
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치수방재과장”을 “안전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홍보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치수방재과”를 “안전치수과”로 하고, “홍보관광과”를 “홍보전산과”로 하며, “홍보관광과장”을 “홍보전산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,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및 <u>건설국</u>을 둔다</p> <p>제9조(<u>건설국</u>) ① <u>건설국</u>에 건설관리과, 도로과, <u>치수방재과</u>, 교통행정과, 자동차관리과, 주차문화과를 둔다.</p> <p>② <u>건설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안전건설국</u>-----.</p> <p>제9조(<u>안전건설국</u>) ① <u>안전건설국</u>----- -----<u>안전치수과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안전건설국장</u>-----.</p>